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
관한 규정 제정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미애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공포) 및 개정 검찰청법(법률 제16908호, 2020. 2. 4. 공포) 부칙에 명시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’을 명확히 하여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,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
나.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입법예고(2020. 8. 7. ~ 9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

제1조(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)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”이란 2021년 1월 1일을 말하고, 같은 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”이란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.

제2조(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)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”이란 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561